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드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라
이관된 내용의 체계자구 정비〉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91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과 현 준

목 차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2200491)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자본금 등 요건 삭제 (안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국토교통부 의견	6
2. 무인항공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삭제 (안 제69조의2 및 제75조제5항 삭제)	8
가. 개정안의 내용	8
나. 검토의견	9
다. 국토교통부 의견	12
3.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중 무인비행장치 관련 내용 삭제(안 70조제4항)	14
가. 개정안의 내용	14
나. 검토의견	15
다. 국토교통부 의견	16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220049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산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를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중심의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계 개선요구 등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등록, 양도·양수, 벌칙 등 드론사업 분야의 질서유지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조기확산 및 질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바,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사업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자본금 등 요건 삭제(안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관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u>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u> 2. 3. (생략) ③ (생략)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 1. ----- ----- ----- . <단서 삭제>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사업법」과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항공사업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건 (안 제48조 제2항제1호 단서)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u>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2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u>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u>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2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서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등록제 요건으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제 요건 및 요건의 예외 규정을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하여 이관한 것임.

이처럼 「항공사업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관하였으므로 「항공사업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됨.

그러나 초경량비행장치에 무인비행장치가 포함되는 현행 「항공사업법」 정의규정 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도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이 포함되므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항공사업법」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따라서 안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만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현행 법령¹⁾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

1)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제48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포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

구분	종류(분야)	사진	개념	무게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고 좌석·무게가 요건에 부합하는 고정익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1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행글라이더		체중이동 또는 날개를 조종(타면조종)하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2호)	자체중량 70kg ↓ (비상용구 제외)
	패러글라이더		발로 이착륙하는 조종자가 탑승하는 날개에 연결된 하네스로 구성된 초경량비행장치	자체중량 70kg ↓ (비상용구 제외)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4호)	-
	무인 비행 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5호 가목)	자체중량 150kg ↓ (연료제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비행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5호 나목)	자체중량 180kg ↓
	회전익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6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동력비행장치를 갖춘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7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낙하산류		항력을 통해 낙하하는 사람(물체)의 속도를 늦추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8호)	-

자료: 국토교통부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드론관리법에 이관됨에 따라 법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항공사업법 내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중복 내용을 삭제할 필요에 동의하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적용

대상이 무인비행장치만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문을 전부 삭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무인항공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삭제(안 제69조의2 및 제75조제5항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69조의2 및 제75조제5항 삭제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관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	<삭 제>

현행	개정안
<u>수리·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u> 5. <u>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u> 6. <u>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u> 7. <u>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u> 8. <u>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u> 9. <u>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략) ⑤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나. 검토의견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및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사업법」과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항공사업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무인항공분야 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안 제 69조의2)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드론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드론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3. 드론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드론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드론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드론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드론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8.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75조제5항)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의 내용은 「항공사업법」 상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에 관한 내용인 제69조의2를 드론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이관한 것임.

이처럼 「항공사업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관하였으므로 「항공사업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맞추어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탁하는 제75조제5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다만,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무인항공 분야 전체를 법제화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드론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²⁾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항공사업법」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유지하고 추후 경과를 살펴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만일 제정안이 입법에 반영된다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제정법률에 이관되는바,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제75조제3항도

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 분	현행 「항공사업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75조제3항)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 의견

법 제69조의2 삭제와 관련하여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조문의 준치가 필요하며, ‘무인비행장치’를 ‘중소형드론’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관한 사항(항공사업법 제75조제3항 관련)은 제정안으로 이관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사업의 등록, 양도·양수 등)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중 무인비행장치 관련 내용 삭제(안 70조 제4항)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70조제4항은 무인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관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③ (생략)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u>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_____ _____ <u>자</u> 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사업법」과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항공사업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안 제70조 제4항)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드론을 드론사용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드론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의 내용은 「항공사업법」 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에 관한 항공보험 가입의무 규정을 드론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이관한 것임.

이처럼 「항공사업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관하였으므로 「항공사업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됨.

다만, 현행 법령³⁾에 따를 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전체를 삭제한다면 이에 맞추어 제78조제4항도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 드론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항공사업법 내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중복 내용 삭제에 동의하나,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신규 제정안(드론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0

3)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